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0호

제21회 건축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국내외 **국가 건축문화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건축인** 및 **건축관계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포상 개요

○ **(포 상 명)** 건설발전(건축의 날) 유공

○ **(포 상 일)** 제21회 건축의 날 행사(9~10월경)

* 행사준비 과정에 따라 일시는 변경 가능

○ **(포상대상)** 국가건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건축인 및 건축관계자*

* 건축사, 대학교수, 건축기능인 및 관련 분야 종사자

○ **(포상규모) 총22명**(정부포상 10명, 장관표창 12명) **예정**

합 계	정 부 포 상 (안)					국토부 장관 표창
	계	훈 장	포장	대통령 표 창	국무총리 표 창	
22명	10명	1명	1명	3명	5명	12명

※ 포상규모는 관계기관 협의 및 공적심사 후 최종 확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음

II 건축의 날 유공 포상 기준

○ 건축 **기획** 및 **설계** 등을 통해 품격 있는 **공간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건축 관련 **학술, 연구,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자

○ **녹색건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자

○ 건축 안전 등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 기여한 자

○ 한옥 등 **건축 자산**의 **보전** 및 **활용** 등에 기여한 자

○ 건축 관련 **사진, 영상, 방송** 등의 분야에서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

○ **건축**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거나 건축을 통해 **사회 공헌**에 기여한 자 등

III 정부포상기준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단체표창 제외)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하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Ⅳ 추진절차 및 추진방법

□ 추진절차

< 포상 추진절차 >

포상후보자 공모·접수	⇒	포상추천자 심사	⇒	범죄수사경력 조회, 공개검증 등 실시	⇒	최종후보자 추천 (국토부→행안부)
('25.1~2월)		('25.3월)		('25.4~7월)		('25.8월)

* 추진절차 및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보자 추천방법

○ **(추천권자)** 국민 누구나 추천가능

○ **(추천대상)** 국가건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건축인 및 관계자

○ **(추천기한)** 2025. 2. 28.(금) 18:00까지

※ 다만, 연중공모가 가능하므로 위 추천기한을 도과할 경우 차년도 후보자 추천으로 접수

○ **(추천방법)** 후보자 추천서 등 제출서류 등기·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소라 주무관 앞**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 연락처 : 044-201-3777
· 이메일 : suiren@korea.kr

○ **(제출서류)** 아래 ①~⑤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① 건축의 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④ 공적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⑤ 정부포상 후보자 인사기록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 공무원만 해당)
※ 공적조서(별지 제6호 서식) 등 정부포상 진행과정에서 피추천인에게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별지 제1호 서식]

「건설발전 유공(건축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현		(~)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별지 제2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토교통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 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 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20조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위 (직급)	한글성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추천 훈격	수공 기간	징 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50자이 내)

[별지 제5호 서식]

인사기록 요약서

1) 소 속		2) 직 위		3)직급	
4) 성 명	한 글		5) 주민등록번호		
	한 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공무원 ☐ 민간업체 ☐ 공사공단 ☐ 기타				

소 속	재 직 기 간	소 속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제외기간	휴직 :		직위해제 :
합 계 ㉯	년 월 일		

18) 실 재직기간(㉮ - ㉯)	년 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장관표창 이상)		

22) 작성자(인사담당자)				23) 확인자(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인	직 급		성 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 인

[별지 제6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⑴ 성 명	한 자(원명)		
⑵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⑶ 군 번 (군인의 경우)	
⑷본적(국적)			
⑸ 주 소			
⑹ 직 업		⑺ 소 속	
⑻ 직 위	⑼ 등 급 (직급 · 계급)		⑽ 근무기간(년월) (수공기간)
⑾ 공적요지 (50자 내외)	⑿ 공 적 분 야 코 드		

⒀ 추천훈격		장관표창	⒁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명 (인)

(뒷 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			

